

광주지방법원 2023. 7. 11 선고 2022가단5400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유현필

피 고 1. 유한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

2.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

담당변호사 윤성식, 김경목

변 론 종 결 2023. 6. 27.

판 결 선 고 2023. 7. 1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[주위적]

1. 피고 유한회사 B(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)은 원고에게 20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에 관하여 2021. 3. 19. 체결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
[예비적]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20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에 관하여 2021. 3. 19. 체결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207,500,000원을 한도로 이를 취소한다.

3.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피고 C이라 한다)은 원고에게 20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B은 2017. 5. 26. ‘액면금 207,500,000원, 수취인 D(주), 지급기일 2017. 12. 30.’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,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60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{이하 D(주)의 피고 B에 대한 위 207,500,000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}.

나. D(주)는 2022. 7. 5. 이 사건 채권을 F(주)에게 양도하고 2022. 9. 22. 그 양도통지사실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,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.

F(주)은 2022. 9. 23.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양도하며, 2022. 9. 23. 그 양도통지사실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,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2. 9. 23. 피고 B을 상대로 위 채권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, 피고들

사이에 2021. 3. 19.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관련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는 한편, 피고 C를 상대로 207,500,000원에 관한 가액배상을 함께 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(소송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)

가. 항변 요지

원고가 F(주)으로부터 D(주)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재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서는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,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관련 양도양수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, 피고 B은 F(주)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1)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.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,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,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가 제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, D(주)와 F(주)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재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원고는, “2014. 5. 15.경부터 2019. 9. 2.경까지 F(주)의 대표이사를 지냈는데, 사임 시 회사의

사정이 어려워 약 5천만 원의 퇴직금과 회사에 빌려준 약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F(주)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2022. 9.경 양도받게 되었다”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가 F(주)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비롯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{원고가 F(주)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면 회계장부 등 제출을 통해 그 내역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},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(사실확인서)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[위 사실확인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차 불분명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‘약 2억 원’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구체적 액수조차 분명치 않다].

D(주)가 2016. 2. 1. F(주)에게 G아파트 신축공사를 21,095,000,000원에 도급 줄 당시 F(주)의 대표이사는 원고 A이었고(갑 제7-1호증 참조), 위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이 2017. 12. 28.임에 비추어 3년의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지난 2022. 7.경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F(주)이 D(주)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.

피고 측은, F(주)과 D(주)는 H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고, 주택사업 공동시행사 포기 합의서(갑 제1호증) 역시 피고 B의 대표이사 I과 위 H이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, F(주)이 D(주)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기 전 채권양도의 원인행위(즉 G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)에 관해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, 원고는 단지 갑 제7호증만 제출하였을 뿐 피고의 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.

원고가 2014. 5.경부터 2019. 9.경까지 F(주)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, F(주)의 대표이사 H은 원고의 처남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여전히 F(주)의 실제 운영자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.

D(주)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2017. 5.부터 무려 5년이 지난 2022. 7. 5.경 F(주)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{2022. 7. 5.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D(주)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22. 5. 20.임에 비추어 보더라도, 위 채권양도양수계약(2022. 7. 5.)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2. 9.경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}, 이 사건 소제기일(2022. 9. 23.) 전날인 2022. 9. 22.경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,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. 9. 23. F(주)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고, 같은 날인 2022. 9. 23.

채권양도사실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 B에 발송하였다.

위 채권양도 및 재양도, 양도사실 통지 등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피고들 사이 이뤄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, 피고 C을 상대로 207,500,000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받고자, 즉 원고는 처음부터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.

3.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

결국 원고가 F(주)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등의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소연

별지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

사업구분 : 주택건설사업 승인

승인번호 :

상호 : (유)

대표자 :

대지위치 : 전라북도 군산시 의 48필지

대지면적 : 24,598㎡

건축면적 : 5,555.63㎡

건폐율(%) : 22.59

연면적 : 72,490.50㎡

용적율(%) : 219.51

세대수 : 585세대

주택형별 : 아파트

사업비 : 117,544,737천원

착공예정일 : 2017년 3월 1일

사용검사예정일 : 2019. 8. 30.

